

엔트리연구원 NewsLetter



엔트리 소식

엔트리 탐방 | 광융합기술연구소

EMC 소식

Safety 소식

해외동향 | 브라질

뉴스

알림마당 | 개정입법안

엔트리연구원 광융합기술연구소 | 광에이징시험

NTREE

New Technology for Renewable Energy & Electrical Testing Lab

(주)엔트리연구원 뉴스레터 10월호 통권 15호 발행일 | 2015년 10월 1일 발행인 | 신택정
편집위원 | 윤순병 발행처 | (주)엔트리연구원

(주)엔트리연구원 Ntree Testing Laboratory Co. Lt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천로44번길 30 우)16204
TEL | 031-893-1000 FAX | 031-893-0111 E-MAIL | ntree@ntree.or.kr Homepage | <http://ntree.or.kr>

수신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 화신 바랍니다.

엔트리연구원 개요

엔트리연구원 지원사항 안내

제품 시험 및 인증 지원

- 제품 시험 (KS의뢰시험, UL, CE, ErP, PSE, IEC, KC EMC 등)
-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에 따른 시험 및 공인성적서 발급
- 해외 인증 (UL, CE 등)을 위한 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
- Energy Star, DLC, Energy Labeling 등록 대행.
- RoHS II, EMF 시험 (2013년부터 CE Directive에 포함됨)
- 국내외 제품 인증 지원
- 유무선 EMC, RF 제품 성능 인증 시험

개발 지원

- 개발 제품의 규격 적합성 사전분석
- 판매 지역 별 적용 규격에 대한 제품 스펙 리뷰
- 적용 규격 개발 주의 사항 리뷰

성능평가 지원

- 조명제품 개발중간 성능 평가 지원
- 제품의 전기적 안정성 검토 (Safety, EMC, EMF)
- 광학 성능 평가 (총광속, 색온도, 색좌표, CRI, 배광시험, 효율, 소비전력)
- IES FIFLE을 통한 조도 시뮬레이션

국가 공인 및 인증기관 지정 시험 기관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자파 무선기기에 대해 지정받은 공인시험기관
- UL로부터 지정된 WTDP 시험기관



국제공인시험소



CEO 인사말

엔트리연구원 뉴스레터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트리연구원 대표이사 신택정입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보내셨는지요. 조금 늦었지만 가정과 고객 여러분들께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합니다. 또한 고객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한동안 발행하지 못했던 엔트리연구원 뉴스레터가 좀 더 알차게 업그레이드 되어 10월에 2015년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전송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발전된 모습과 꾸준한 발행으로 보다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엔트리연구원은 지난 6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사가 운영 중인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원 본사 인근에 무선 및 전자파 공인시험이 가능한 제 2시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시험소가 완공되면 전자기기, 조명기기, 정보통신기기, 무선기기 및 일반가전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시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 2시험소 설립에 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엔트리연구원은 날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국내외 사업환경과 정세를 분석하고 기술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철저한 준비와 기술의 구축 및 정착에 보다 힘쓰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사업 추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트리연구원 대표이사 **신택정**



국내

엔트리연구원 전파연구원 추가 시험범위 등록

- 시험장비 구축 및 기술을 인정받아 전파연의 추가 시험범위 등록

- RRA 추가 지정

- 가정용기기 및 전동기기류 추가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추가
- 주거, 상업 및 경공업/산업환경 추가

- 베트남 MRA 추가

- 미국 MRA 추가

엔트리연구원은 고객사 여러분들께 더 폭 넓은 시험 분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FCC

- FCC 시험기관 등록 관련
- FCC 2.948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EA-Order주요 내용 / “Transition Period” (4)

14-208이 채택되고 난 후 30일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2.948은 정지 될 것이며 더 이상 적용 하지 않음.
Site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시험장은 NIST 등 AB를 통해 인가를 받고 MRA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는
FCC에 협약된 기관에서 가능 하며 제3국가는 별도 규정 만들어야 함.

2015년 7월 12일 현재 FCC의 2.948 시험소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인정 된 시험 기관에 대한 FCC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필히 인지되어야 할 핵심 사항 중 변화된 일부임.

- 1) FCC 2.948 지정 시험소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 2) 모든 인증 시험은 FCC에서 지정한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하여 승인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 3) FCC는 향후 2.948에 따라서 새로운 시험소 또는 시험장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다.
- 4) 2.948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시험소는 2016년 7월 12일까지만 지정이 유효하다.
- 5) 2016년 7월 13일 이전에 시험된 경우 2016년 10월 12일까지 TCB에서 승인한다.
- 6) 2016년 7월 12일 이전에 승인이 만료되면, 만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www.fcc.gov/eas에 접속하여 표준 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renew test firm/add attachments”를 클릭하여 실행한다.
- 7) 2016년 7월 12일 이후에 승인이 만료 되는 경우, FCC는 자동으로 만료기간을 2016년 7월 12일 자로
수정한다.

EU 유럽

- 새롭게 변경되는 RED, LVD (Directive 2014/35/EU),
EMCD (Directive 2014/30/EU)

● RED Scope

- 음성 및 TV 수신 전용 기기도 RED에 포함
- 9 kHz 이하 동작 기기도 RED에 포함
- TTE 기기는 RED에서 제외
- 전문가용 평가 키트 등 일부 제외

Directives 적용 2014/53/EU, 2014/35/EU and 2014/30/EU

INTRODUCTION

이 문서는 새로운 지침의 적용 가능한 날짜와 이행하는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 분야의 새로운 Directive, RED(Directive 2014/53/EU), 새로운 LVD(2014/35/EU) 및 새로운 EMCD(Directive 2014/30/EU) 등에 관한 것이다.

RED 범위

새로운 무선 장비 지침(RED)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9/5/EC - the R&TTE Directive는 2016년 6월 13일부터 새로운 RED로 교체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을 RED으로 16년 6월 12일까지 전환한 후 6월 13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RED는 Directive 1999/5/EC (the R&TTE Directive) 대비 RED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다.

- (1) R&TTE 지침에서 제외된 음향 및 TV수신 전용 제품은 Directive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 (2) R&TTE 지침에서 제외된 9KHz 이하에서 동작 하는 기기는 Directive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 (3) Radio-determination 기기는 현재 명확하게 해당 Directory 범위 내에 포함된다.
- (4) 통신 단말 기기는 현재 해당 Directive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 기기는 추후에 LVD/EMC Directive에 포함될 예정이다.
- (5) 전문가용으로 개발된 평가 키트 혹은 연구 개발 시설은 명시적으로 RED에서 제외된다.

RED는 아래와 같이 이행 기간(제48조)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16년 6월 13일 이전까지 통합된 조화 법령(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에 따라 제정된 Directive에 만족하는 무선 기기의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2017년 6월 13일 이전까지 Directive에 적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Directive로 교체되기 까지 R&TTED 가 적용되며, 이 법안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시험 승인되어야 하며, 이때 R&TTE Directive 조화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LVD/EMCD 범위

새로운 LVD와 EMCD는 2014년 4월 18일 자로 유효화 되며,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LVD(Directive 2006/95/EC)는 새로운 LVD로 교체되며, EMCD (Directive 2004/108/EC)는 2016년 4월20일자로 새로운 EMCD로 교체된다.

새로운 LVD와 EMCD의 범위는 현재의 범위와 동일하며, 전문가 용도로 주문생산 되는 평가 키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외 사항이 추가 되었다.

반면에 LVD/EMCD 개정판에는 이러한 범위의 변경 사항이 없으며, 협존하는 R&TTE Directive의 범위에 대한 변경 내용은 아래 두 종류의 Directive에만 해당된다.

- 1) R&TTE Directive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에 적합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LVD/EMCD가 적용 될 예정이다.
- 2) 새로운 LVD/EMCD는 RED를 제품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총평

RED는 2016년 6월13일 이후에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새로운 LVD/EMCD 2016년 4월20일 이후에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법령 적용 개요

1. OLD LVD/EMCD 법령하의 제품 및 신규 적용될 LVD/EMCD (EVEN AFTER APPLICABILITY OF RED)
 - 2016년 4월20일 이전 시장 출시 제품 : OLD LVD/EMCD
 - 2016년 4월20일 이후 시장 출시 제품 : NEW LVD/EMCD
2. R&TTED 및 RED 범위 내의 관련 기기
 - 2016년 6월13일 이전 시장 출시 제품 : R&TTED
 - 2016년 6월13일부터 2017년 6월 12일 사이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 R&TTED or RED
 - 2017년 6월12일 이후 시장 출시 제품 : RED
3. OLD/NEW LVD/EMCD 적용 제품 이지만 조만간 RED에 적용될 (RED 적용 후)-예로 TELEVISION이나 SOUND BROADCASTING RECEIVERS
 - 2016년 4월20일 이전 시장 출시 제품 : OLD LVD/EMCD
 - 2016년 4월20일부터 2016년 6월 12일 사이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NEW LVD/EMCD
 - 2016년 6월13일부터 2017년 6월 12일 사이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RED or NEW LVD/EMCD
 - 2017년 6월12일 이후 시장 출시 제품 : RED
4. R&TTED 적용 제품 이지만 조만간 OUTSIDE RED -예로 단말 기기
 - 2016년 6월 13일 이전 시장 출시 제품: R&TTED
 - 2016년 6월12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제품: RED는 적용되지 않으며 NEW LVD/EMCD, if applicable to the product in question

부록

- ABBREVIATIONS -

RED: Directive 2014/53/EU

R&TTED: Directive 1999/5/EC

New LVD: Directive 2014/35/EU

Old LVD: Directive 2006/95/EC

New EMCD: Directive 2014/30/EU

Old EMCD: Directive 2004/108/EC

조명 LVD 규격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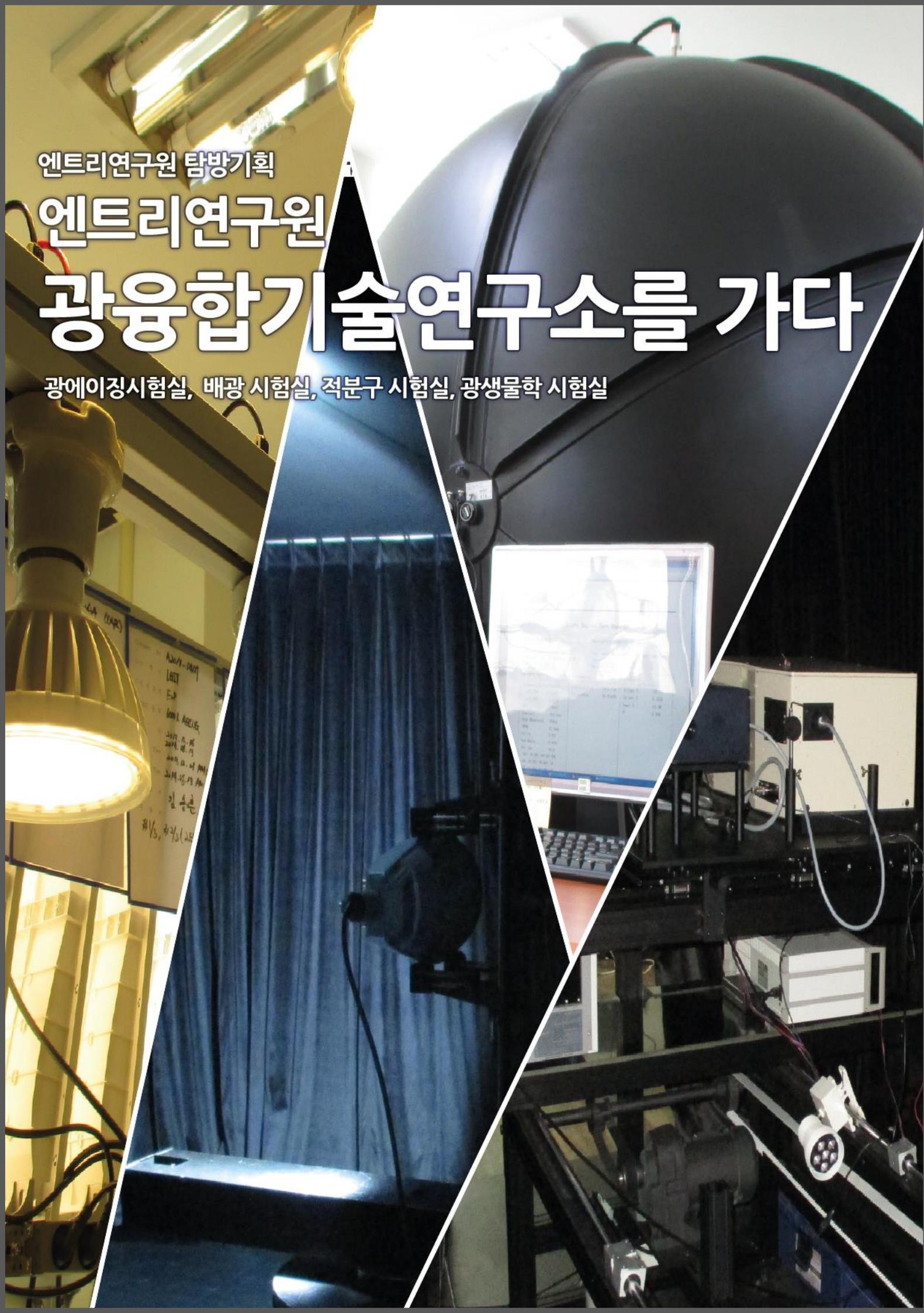
- 60598-1과 61347-1의 규격 업데이트에 따라 관련된 등기구 및 controlgear는 모두 영향
- Double-capped LED lamp가 신규규격으로 적용

● 규격 변화표

최신규격	기준규격	기준규격 만료일
EN 60598-1:2015 Luminair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EN 60598-1:2008 + A11:2009	2017년 10월 20일
EN 61347-1:2015 Lamp controlgear — Part 1: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EN 61347-1:2008 /A1:2011	2016년 1월 1일
	IEC 61347-1:2007 /A1:2010	
	EN 61347-1:2008 /A2:2013	2018년 3월 26일
EN 61347-2-13:2014 Lamp controlgear — Part 2-1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c. or a.c. supplied electronic controlgear for LED modules	EN 61347-1:2008 /A2:2013	2017년 10월 8일
EN 62776:2015 Double-capped LED lamps designed to retrofit linear fluorescent lamps Safety specifications		

엔트리연구원 탐방기획
엔트리연구원
광융합기술연구소를 가다

광에이징시험실, 배광 시험실, 적분구 시험실, 광생물학 시험실



엔트리연구원 광융합기술연구소를 가다!

민간 시험소 최초로 광학분야 연구소를 설립·구축한 엔트리연구원 엔트리연구원의 광융합기술연구소를 들여다 보았다.

Q. 엔트리연구원의 광융합기술연구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트리연구원 광융합시험소에서 광학시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승훈 과장입니다. 엔트리연구원의 광융합기술연구소는 자사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시험원에서 유일하게 광학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소입니다. 시험소는 적분구 시험실, 에이징 시험실, 배광시험실, 광학시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광융합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엔트리연구원의 광융합기술연구소는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시험분야, 인증지원분야, 기술연구 및 기술지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험분야에서는

첫번째로 제품에서 방출되는 빛을 집광시켜 빛의 양, 색 특성, 파장분포를 분석하는 광원 분석 시험
두번째로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을 각도 별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수치화 및 도식화 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시험
세번째로 광원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광량을 검출하여 위해 정도를 평가 분석하는 시험
네번째로 제품의 전기적 특성에 따른 빛의 변화를 시험 분석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을 진행함과 동시에 고객사가 필요한 인증 획득 지원도 진행합니다.

기술연구 및 기술지도에서는

첫번째로 인공광원이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 정도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빛공해 모의평가
두번째로 빛공해 제어가 가능하도록 각종 조명용 렌즈 설계
세번째로 조명의 사용 용도, 적용지역에 맞게 빛의 색과 품질을, 발산경로를 제어하여 적절한 조명의 설계를
이끄는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빛공해 및 Flicker를 제어하는 연구 및 외부기술 세미나 진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리연구원 광생물학 시험과정

Q. 광융합기술연구소에서 많은 업무를 진행하는군요? 고객사 여러분들을 위해 시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A. 나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볼까요? 우선 광원 분석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분구를 통한 표준광원을 스펙트로메터로 측정하여 광원을 분석하는 시험입니다. 측정항목은 광학부분에서는 Luminous flux, Efficiency, Color coordinate(x/y), CCT, CRI, Spectrum(spectral power distribution from 380-780 nm), Spectral bandwidth, Peak wavelength, Red ratio, S/P ratio, Purity 외가 있습니다. 전기부분에서는 Voltage, Current, Power, PF를 측정합니다.

두번째로 제품의 광량, 광분포도를 시험 분석하는 시험입니다. 절대광속측정기 고니오메터와 광도 측정용 센서를 통해 빛을 발광하는 제품에 대한 빛의 방향 및 광도를 산출합니다. 측정항목은 광학부분에서는 Luminous flux, Efficiency, Beam angle, Zonal lumen, 2D/3D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Cone-curve, Lightingsimulation, Color properties. 전기부분에서는 Voltage, Current, Power, PF를 측정합니다.

세번째로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분석하는 시험입니다. 광생물학적 안전성은 조명기기에서 방출되는 빛이 인체의 눈과 피부에 유해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광원과 특정거리를 두고 거리를 변경해가며 모노크로메터로 광량을 측정 하여 위해정도를 평가 판정합니다. 측정항목은 광학부분에서는 Hazard level (for Actinic UV, Near UV, Blue light, Retinal thermal, IR radiation), Irradiance, Radiance, Spectral distribution, ChroColor properties 외를 전기부분에서는 Voltage, Current, Power, PF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전기특성을 분석하는 시험입니다. 광전기특성 분석은 방출되는 빛을 세분화하여 떨림이나 이상작동은 없는지 확인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기적 특성을 변경하였을 때 발광하는 빛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측정항목은 광학부분에서는 PSE flicker, Energystar Flicker(flicker index, percent flicker), Starting time, warm-up time, Switching cycle test (on/off test), Aging test 외를 전기부분에서는 Voltage, Current, Power, PF를 측정합니다.

해당 시험 외에 최근 이슈가 되는 빛공해에 대한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빛의 떨림을 Flicker라 하는데 사람이 Flicker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시 어지러움증,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는 연구 및 외부기술 세미나 진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 되었을까요?

))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브라질

브라질 바야흐로 LED 조명의 시대, 백열등은 가라

- 브라질 정부, 백열등 금지규제 시행
- 일부 LED 제품 강제인증 시행

● 개요

- 2015년 7월 1일부로 백열등 25W, 40W 백열등의 수입 제조 금지, 60W의 판매 금지 됨. 업체들은 재고를 1년이내에 팔아야 함.
- 브라질은 2010년은 브라질 가정의 70%가 백열등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25%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올해 12월 일부 LED 제품 강제인증 법령이 실행될 예정이어서 브라질 수출을 계획 중인 한국업체의 주의를 요함.

● 세부 사항

-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백열등 사용을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전등의 최소 효율을 지정. 올해 7월 1일부로 60W의 판매가 금지되며 25W, 40W는 수입 및 제조가 금지됨. Eduardo Brag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백열등 금지 법령이 백열등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점차 바꾸는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고 발표.
- 향후 150W 이하의 제품은 2016년 6월까지 교체해야 하며 40W 이하의 제품은 자발적으로 교체를 권함. 100W, 150W, 200W의 제품은 시장에서 이미 판매 중지됐으며 25W에서 45W 사이의 전구는 2016년 6월 30일 이후로 판매가 금지됨. 2017년부터는 최소효율성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
- 이 법령의 시행으로 경제적이고 지속적인 제품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UN에 의하면 백열등의 교체는 세계적으로 연간 5% 전기의 절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함. 같은 밝기의 콤팩트 형광등의 경우 백열등에 비해 75%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LED는 85%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짐.

● LED 전등에 대한 브라질의 전자파 강제인증(EMC)

- 한편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지난 2015년 3월 13일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제품의 안전성, 에너지효율, 전자파적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Portaria Inmetro/MDIC nº 144 규정안을 발표함. 본 법령은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인증 규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요건은 2014년 8월 25일에 발표된 389번 법령에 명시돼 있음. 해당 LED 램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 INMETRO로부터 지정받은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이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은 규격 CISPR 15:2013을 준수해야 함.
- 규제 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

- 공칭전력 최대 60W까지 제품
- 공칭전압이 50V에서 250V 사이 제품으로 규정 ABNT NBR IEC 62560:2013 (B15d, B22d, E11,E12, E14, E17, E27, G5, G9, G13, GU10, GZ10);를 준수한 제품
- 공칭전압이 50V까지(교류 혹은 직류)이며 기반이 G4, GU4, GY4, GX5.3, GU5.3, G6.35, GY6.35,G53, GU7, G5, G5.3, G13인 제품
- 제어시스템 일체 관형(Tubular) LED제품, 관형 형광등의 대체제품으로 크기가 NBR IEC 60081를 준수하고 기반이 G5, G13 혹은 R17DC인 제품
- 제외품목: 일체형 제품이나 컬러 LED 전구 및 램프, RGB로 색이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용,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여러 색으로 조정이 가능한 LED전구

● 시행예정 시기

시기	내용
2015년 3월 13일	nº144 규정안 발표
2015년 12월 17일	현지 제조 및 수입 시 적용
2016년 6월 17일	수입자, 제조사는 강제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구입 가능
2017년 3월 15일	소매, 도매상까지 금지 확대, INMETRO 인증 있는 LED제품만 유통·판매·구입 가능

● INMETRO 강제인증에 대한 현지 반응

- 대부분의 현지 LED 수입·제조업체들은 이 인증에 관해 잘 인지하고 있음. 2013년 LED EXPO에 참가한 현지업체 Neolux는 INMETRO에서 LED 규정안 발표 전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담회에 참여한 바 있음. Neolux는 이미 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INMETRO 인증서를 신청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시험기관에서 소요되는 시험시간 6000시간이며 12월 전에 인증서 획득을 예상함.

- 일부 현지 LED 수입업체는 12월 이전에 다양을 수입해 2017년까지 유통하기를 희망함.
- 브라질 현지 기업 FLC사는 인증 획득에 4~9개월(서류가 모두 준비됐을 때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며 역시 인증획득 절차 중임.

- 한편, 산업형 LED(60W 이상, 분리형) 관련 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아직은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향후 강제인증이 필요한 LED 제품군이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예상함.

● 시사점

- 백열등 금지법안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 증대, 전기세 인상 등으로 인해 브라질 LED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강제인증제가 60W 이상의 제품도 인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LED 수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INMETRO 홈페이지 등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 출처 및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개정입법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 ◎ 2015년 08월 4일
- ◎ 제1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기용품별 위해 수준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2015년 08월 4일
- ◎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등의 범위)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 기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③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의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전파법 개정안 고시

● 전파법 개정 자세히보기

- ◎ 신규법 : [시행2014.12.4] [법률 제12726호, 2014.6.3, 일부개정]
- ◎ 신규법 : [시행2015.04.21] [법률 제13012호, 2015.01.20, 일부개정]

● 무선설비 규칙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9호 (2015년 07월 31일)
- ◎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 . 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1호, 2015.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14호 (2015년 03월 25일)
-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71호 (2015년 08월 2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호 (2015년 03월 25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7호 (2015년 08월 21일)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7호, 2015. 3.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관련문의

E M C : 김복수 부장 / bskim@ntree.or.kr / 070-4757-1566

Safety : 김덕준 부장 / djkim@ntree.or.kr / 070-4757-1571

Light : 김승훈 과장 / shkim@ntree.or.kr / 070-4757-1575

국내외 LED & 조명 이슈

1. LED조명업계, 서울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울상'

- 터무니없는 낮은 설계금액에 낙찰돼도 손해 걱정할 판
- 지자체가 단가하락 부추겨 지적, 품질저하도 우려
- 밝은서울엘이다, "현재로선 조정계획 없다" 밝혀

+ 기사원문 보기

2. LED 활용한 신서비스 모델을 '한눈에'

- 산업교육연구소, 'LED 활용한 신시장 창출 세미나' 개최
-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서

+ 기사원문 보기

3. 노후 도로조명 교체사업 누전차단기 설치 일률적 제한 '빈축'

- 안전 위해선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 낫다던 서울시, 도로조명은 예외?
- 매년 부적합 수천건 발생하지만 예산 아끼려 차단기설치 제한

+ 기사원문 보기

4. LED조명은 롱텀 비즈니스, 장기적 전략 필요

- 김영우 한국광기술원 센터장, 산업교육연구소 세미나서
“1930년대 개발된 형광등도 아직 사용, LED도 보급에 시간 걸려”

+ 기사원문 보기

자료 출처 및 저작권자: 전자신문



고객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

영업 | 임명규 부장 | 010-7380-0838 | mglim@ntree.or.kr
영업 | 김진명 과장 | 010-2209-7336 | jmkim@ntree.or.kr
중국 영업 | 김진수 이사 | 010-8720-6882 | jskim@ntree.or.kr
고객지원 | 이영애 차장 | 010-3820-0600 | yalee@ntree.or.kr

Web: www.ntree.or.kr / E-mail : ntree@ntree.or.kr
TEL : 031 - 893 - 1000 / FAX : 031 - 893 - 01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천로44번길 30 엔트리빌딩